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 관련)

유형	내용	처리기준	
		위반기간	의무자
1.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가. 전직·과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경우		연장 복무
	나.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 훈련, 출장, 과견근무를 한 경우	3개월 이상	연장 복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고
		1개월 미만	시정
2. 편입 당시 해당 분야가 아닌 분야 근무	가. 편입 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 분야가 아닌 분야(연구·제조·생산 분야가 아닌 사무직, 영업직 등 다른 분야)에 근무한 경우		연장 복무
	나. 편입 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연구·제조·생산 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분야와 겹쳐 근무한 경우	3개월 이상	연장 복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고
		1개월 미만	시정
3. 겸직금지규정 위반	병역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 경우	1개월 이상	연장 복무
		1개월 미만	경고
4. 수확규정 위반	의무복무기간 중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확한 경우		연장 복무
5. 동일사항 반복 위반	가. 연장 복무 후 다시 연장 복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편입 취소
	나.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연장 복무
	다.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